

|          |      |   |
|----------|------|---|
| 의안<br>번호 | 1307 | 【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】<br><b>검 토 보 고 서</b> |
|----------|------|---|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6. 12. 6.(화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6. 12. 12.(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6. 12. 16.(금)

### 2. 제안이유

○ 『지역문화진흥법』 제8조에 따라 건립되는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,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생활문화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명칭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사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9조)
- 다.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위원 회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 제12조)
- 라.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- 마. 운영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 (안 제14조 ~ 제15조)
- 바.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6조 ~ 제17조)

### 4. 관련법령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8조

## 5. 검토의견

- 『지역문화진흥법』 제8조에 따라 건립되는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,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
- 2016. 10. 24부터 11. 14까지 입법예고 실시로 주민의견을 들었으며,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< 관계 법령 >

### □ 지역문화진흥법

제8조(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「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